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2022. 12.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122
----------	--------

2022. 12. 5.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2. 11. 15.
- 다. 회 부 일 : 2022. 11. 18.

##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3.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 가. 세 입
  - 해당 없음.
- 나. 세 출
  -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8억7,226만9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 42억2,528만5천원 대비 △8.35% 감액된 규모임.

(단위:천원)

구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3,872,269	4,225,285	△353,016	△8.35%
정책사업	1,780,082	1,812,093	△32,011	△1.77%
행정운영경비	2,092,187	2,413,192	△321,005	△13.30%

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3,872,269	4,225,285	△353,016	△8.35%
일반공공행정	1,780,082	1,812,093	△32,011	△1.77%
입법및선거관리	1,780,082	1,812,093	△32,011	△1.77%
선진의회상 정립	1,780,082	1,812,093	△32,011	△1.77%
의정활동 지원	1,703,576	1,713,317	△9,741	△0.57%
의정활동 홍보	76,506	98,776	△22,270	△22.55%
기타	2,092,187	2,413,192	△321,005	△13.30%
기타	2,092,187	2,413,192	△321,005	△13.30%
행정운영경비	2,092,187	2,413,192	△321,005	△13.30%
인력운영비	1,921,288	2,258,992	△337,704	△14.95%
기본경비	170,899	154,200	16,699	10.83%

-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의회 전체 예산의 45.97%, 17억8,00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77%, △3,20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0억9,218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3.3%, △3억2,10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음.

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의회사무국	3,872,269	4,225,285	△353,016
선진의회상 정립	1,780,082	1,812,093	△32,011
의정활동 지원	1,703,576	1,713,317	△9,741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621,921	1,650,912	△28,991
인건비	40,499	33,367	7,132
일반운영비	111,456	97,057	14,399
여비	36,880	30,880	6,000
업무추진비	50,494	50,494	0
직무수행경비	15,225	17,900	△2,675
의회비	1,272,137	1,217,822	54,315
포상금	10,000	0	10,000
연금부담금등	39,600	39,600	0

(단위:천원)

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비및부대비	8,390	55,000	△46,610
자산취득비	37,240	108,792	△71,552
국외 선진의회 연수	81,655	62,405	19,250
일반운영비	980	980	0
의회비	80,675	61,425	19,250
의정활동 홍보	76,506	98,776	△22,270
의정활동 언론 홍보	33,000	30,250	2,750
일반운영비	33,000	30,250	2,750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43,506	68,526	△25,020
일반운영비	43,506	68,526	△25,020
행정운영경비(구의회사무국)	2,092,187	2,413,192	△321,005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1,921,288	2,258,992	△337,704
인력운영비	1,921,288	2,258,992	△337,704
인건비	1,789,785	2,091,479	△301,694
직무수행경비	58,778	65,970	△7,192
포상금	72,725	101,543	△28,818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170,899	154,200	16,699
기본경비	170,899	154,200	16,699
일반운영비	111,638	95,259	16,379
여비	36,540	36,540	0
업무추진비	14,921	14,601	320
직무수행경비	7,800	7,800	0

- 주요 증액사업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사운영비(정년퇴임식, 공로패·기념품 등) : 3,000천원(신규)
  - 포상금(유공공무원, 명예퇴직공무원, 정년 격려 등) : 10,000천원(신규)
  - 기타직보수(정책지원관 등) : 529,507천원(76.14%)
  - 의원국외여비(의원국외연수) : 80,675천원(31.34%)
  - 공공운영비 : 49,851천원(26.36%)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설비 : 8,390천원(△84.75%)
  - 자산및물품취득비 : 33,240천원(△68.28%)
  - 보수 : 1,260,278천원(△29.63%)

## 4. 검토결과

### 가. 예산규모

-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포구 전체 예산액의 0.52%인 38억7,226만9천원으로 ‘선진의회상정립’ 예산 17억8,008만2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9,218만7천원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42억2,528만5천원 대비 △8.35%, △3억5,301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의정공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899만1천원(△1.76%) 감액된 16억2,192만1천원을 편성했음.
- 인건비는 전년 예산 대비 713만2천원(21.37%) 증액된 4,049만9천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기간제근로자(속기사무보조)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편집 교정사)를 적용한 것임.
- 일반운영비는 전년 예산 대비 1,439만9천원(14.83%) 증액된 1억1,145만6천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 내역은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1,280만원), 의원 노트북 소프트웨어(14개) 구입비(985만6천원), 인사위원회 심사수당(360만원), 경하기 사용료(144만원), 의장 의전차량 렌트비(910만8천원), 의원 독감백신 구입(32만3천원), 전자회의시스템 연간 유지 보수비(833만1천원), 정년퇴임식 관련 행사운영비(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여비는 전년 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된 3,688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국제화여비인 의원해외비교시찰 등 수행경비(1인당 200만원→250만원)의 증액에 따른 것임.
-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회비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 대비 5,431만5천원(4.46%) 증액된 12억 7,213만7천원이 편성되었음.
 

▶ 의정활동비	2억5,080만원(증액 1,320만원)
▶ 월정수당	6억550만원(증액 3,978만7천원)
▶ 의원국내여비	1,155만5천원(증액 34만5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원(△918만8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2,089만3천원(전년도와 동일)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770만원(증액 30만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040만원(증액 160만원)
▶ 의원정책개발비	9,500만원(증액 500만원)
▶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전년도와 동일)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07만4천원(증액 125만4천원)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21만5천원(증액 201만7천원)
- 포상금은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는 유공공무원 포상금 6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100만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 3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음.
-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 예산 대비 △4,661만원(△84.74%) 감액된 839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전년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무국 재편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신규로 편성한 의원연구실(의장실 등 포함)도배 495만원, 의회 연결통로(2층, 3층) 소방 관련 방화문 보강작업 344만원에 따른 것임.

- 자산취득비는 전년 예산 대비 △7,155만2천원(△65.76%) 감액된 3,724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액 요인은 전년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집기품 구매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실 구성 완료에 따라 소유 사유가 사라짐. 주요 신규편성내역은 제9대 조선의원 행정전산장비(노트북) 14대 구매비 3,080만원과 야외 행사시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매비 244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음. 기타 사업 편성목은 예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음.
- “국외 선진의회 연수”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의회비(의원국외여비)로 구성되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1,925만원(30.85%) 증액된 8,165만5천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의원국외여비[1인당 여비: 262만5천원→350만원]를 증액 편성한 것임.
-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의정활동시 필요한 기획보도비용과 마포구의회 지역신문 광고금액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27만원(△22.55%) 감액된 7,650만6천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은 출입 언론사(신규) 및 광고 횟수 증가(55회→60회)로 전년대비 27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의 의회홍보동영상미제작과 의회보 제작 횟수 감소(2회→1회)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음.
- “행정운영경비” 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됨.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으로서 전년 예산 대비 △3억3,770만4천원(△14.95%) 감액된 19억2,128만8천원이 편성되었음.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반영하여 보수(일반직 현원,18명)와 기타직보수(임기제등 현원, 10명)를 편성하고, 특히 사진촬영 시간선택제(라급) 임금을 신규 편성함.

-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 대비 1,669만9천원(10.83%) 증액된 1억7,089만9천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특근매식비의 실현원에 맞춘 증액과 위원회실 공기청정기 사용료 신규 편성, 케이블TV 시청료 1회선 추가 편성에서 기인한 것임.

## 5. 검토의견

-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8억 7,226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2억 2,528만 5천원 대비 △3억5,301만6천원(△8.35%) 감액 편성됨.
- 신규 편성된 사업은 의정활동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제9대 조선의원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구매, 경하기 사용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정년퇴임 등의 행사운영비, 유공 및 정년퇴직공무원 포상금, 의원연구실 및 의회시설 보강비, 이동식 앰프, 정책지원관 및 사진촬영직 인건비 등으로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적 범위에서 전년도와 같거나 낮게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음.
- 특히, 제9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과 의회비의 증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의 기타직 보수의 증가 이유로 전년도 대규모 시설사업인 본회의장 방송통신 사업과 의회사무국 공간 재배치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액의 큰 감소가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의회비는 총 12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 4개 통계  
목은 전년도 총액한도<sup>1)</sup>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  
년 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2023년도 한도액은 전년대비 3.64% 증가  
한 3억3,196만8천원으로 총액한도 설정 범위 내 있음.

- 다만, 사업별 우선순위와 편성목별로 세밀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의정활동  
소요경비의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 편성 사업 중 의회청사 시설 개선, 직원 복리, 의정 정보화 활동  
지원, 선진 의회상 정립 등의 예산은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의회 청사 시설은 내구연한의 따른 교체 및 보강 측면의 개선이 아  
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업무량 조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안과 안전을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청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패러다임 전환 사례는 관용차량의 장기렌트 운용 경제성 검토 의견(8대, 제  
251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최은하 위원장)으로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음.
-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  
립성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서는 금번 예산안에 퇴직공무  
원 포상 차원의 유공공무원 격려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법령에서 의회 인  
사권 독립 의지 차원의 의장이 표창권자로 규정된 것에 대한 조치로서 긍  
정적으로 보임. 다만, 상훈의 품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과 공적심의를 철  
저히 마련해야 하겠음.

---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 향후,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관리와 의회에 맞는 인재상을 마련하여 조직·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회 사무국이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조직 문화와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복리후생 사항들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하겠음.
- 셋째, 의정 정보화 활동 지원은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차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하였는데, 최초 시스템 도입 시 모든 기능의 필요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정 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의회내 이용자 조사 등의 미료로 인해 시스템 설치 이후 기능 누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등이 이뤄진 것을 보면 사전 준비 등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스템 유지관리가 기능 추가인지, 누락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 결정 검토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음.
- 아울러, 제9대 조선의원 노트북 등 구매는 기초의원의 보좌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이 직접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용물품으로서의 훼손 및 분실의 대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 넷째, 선진의회 정립과 관련한 해외 연수활동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2,625,000원/인 에서 3,500,000원/인 으로 증액되었음.
-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용처리되었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폭 상승된 것임. 의원 해외 연수활동은 선진지의 비교 견학을 통해 비교 우위 정책 등을 우리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고 국내외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 조치가 해제되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코로나19확산에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의 대외적 여론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겠음.

- 또한, 의원국외여비 위법 집행 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sup>2)</sup> 예산 삭감 등 제재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된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 정책연구용역비로 발주 가능한데, 제한된 인원 속에서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면 소규모 용역이 발주되어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실한 용역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질 높은 용역 결과로 정책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발주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섯째,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2023년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은 성인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 이와 관련해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정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포구의회에서도 ‘모의의회 운영’ 및 ‘의원역량개발 사업’ 등에서 성인지 예산안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추진 사업들이 성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하겠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1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3,600	
2	경하기 사용료	사무관리비	1,440	
3	의원 노트북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	9,856	
4	의장 의전차량 렌트비	사무관리비	9,108	
5	의원 독감백신 구입	사무관리비	323	
6	전자회의시스템 연간 유지 보수비	사무관리비	8,331	
7	정년퇴임식 등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2,000	
8	공로패 및 기념품 제작	행사운영비	900	
9	유공공무원 포상금	포상금	6,000	
10	명예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포상금	1,000	
11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	포상금	3,000	
12	의원연구실(의장실 등 포함) 도배	시설비	4,950	
13	의회 연결통로(2층, 3층) 소방 관련 방화문 보강작업	시설비	3,440	
14	제9대 의원 행정전산장비(노트북)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30,800	
15	이동식 앰프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2,440	
16	사진촬영 시간선택제(라급)	기타직보수	55,148	
17	위원회실 공기청정기 사용료	공공운영비	2,640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